

# 제64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

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.

당사는 상법 제363조와 정관 제15조에 의거 제64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
1. 일 시 : 2022년 03월 30일(수요일) 오전 10시 00분

2. 장 소 : 전북 군산시 외항7길 20 (소룡동) ㈜에스에이치에너지화학 대회의실

3. 회의 목적 사항

가. 보고사항 : 감사보고, 영업보고,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

나. 부의안건

제1호 의안 : 제64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

제2호 의안 : 정관 일부 변경의 건(첨부 1)

제3호 의안 : 이사 선임의 건(첨부 2)

제3-1호 의안: 사내이사 서미혜 선임의 건

제3-2호 의안: 사외이사 이남녕 선임의 건

제3-3호 의안: 사외이사 성원모 선임의 건

제4호 의안 :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기타비상무이사 정미영 선임의 건(첨부 3)

제5호 의안 :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(첨부 4)

제5-1호 의안: 감사위원회 위원 이남녕 선임의 건

제5-2호 의안: 감사위원회 위원 성원모 선임의 건

제6호 의안 :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

4. 배당내역

- 1주당 예정 배당금 : 보통주 10원, 우선주 15원

5. 경영참고사항 비치

상법 제542조의4에 의한 경영참고사항은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본점과 명의개서대행회사(국민은행 증권대행사업부)에 비치하였으며,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에 전자공시하여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6. 의결권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

가. 본인 또는 대리인의 참석에 의한 행사

: 주주님께서서는 본인이 직접 주주총회에 참석하시거나 대리인을 대신 참석하게 하는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.

▶ 본인이 직접 의결권 행사시

: 주주총회 참석장, 신분증 지참

▶ 대리인을 통한 의결권 행사시

: 주주총회 참석장, 위임장(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, 기명날인),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

나.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

우리회사는 「상법」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를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. 이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 하였습니다.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.

가) 전자투표 관리시스템

- 인터넷 주소 : 「<https://evote.ksd.or.kr>」
- 모바일 주소 : 「<https://evote.ksd.or.kr/m>」

나) 전자투표 행사 기간 : 2022년 03월 20일 09시 ~ 2022년 03월 29일 17시  
(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)

다) 인증서를 이용하여 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안별 전자투표 행사

-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: 코스콤 증권거래용 인증서, 금융결제원 개인용도제한용 인증서 등

라) 수정동의안 처리 :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

다. 서면투표에 의한 행사

: 당사는 정관 제24조의2에 의하여 서면투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. 주주님께서서는 첨부하여 드린 서면투표 의결권 행사 서면에 의안별 찬·반을 표기하시어 주주총회 전일인 2022년 03월 29일 까지 당사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.

▶ 서면투표 의결권 행사서면 제출기한

: 2022년 03월 20일 ~ 2022년 03월 29일(주주총회 전일)까지

▶ 의결권 행사서면 제출처

① 주주총회전 접수처

-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45(삼성동, 본솔빌딩) 13층(우편번호 06158)
- 우편 접수 가능 여부: 가능

※ 전자투표와 서면투표 중 택일하여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며 중복으로 행사할 수 없음

7. 기타사항

가. 상법시행령 제31조 4항 4호에 따른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는 주주총회일 1주전까지 당사 홈페이지(<http://www.sh-enerchem.com>)에 게재할 예정이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.

나. 주주총회 이후 변경된 사항에 관하여는 「DART-정기공시」에 제출된 사업보고서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다.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(COVID-19)의 감염 및 확산을 예방하기 위하여, 주주분들은 주주총회 참석시 필히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 또한, 열화상 카메라 등으로 주주총회 참석자의 체온을 측정할 수 있으며, 마스크 미착용 및 발열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출입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 또한, 주주총회 개최 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(COVID-19) 확산에 따른 불가피한 장소 변경이 있는 경우, 지체없이 통지할 예정입니다.(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, 유사시 급박한 총회장소의 변경에 대한 결정을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.)

※ 금번 주주총회에서는 기념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.

2022년 03월 일



주식회사 SH에너지화학

대표이사 정케빈규봉 (직인생략)

**(첨부 1) 정관 변경(안) 신·구조문 대비표**

현 행	변 경 (안)	비 고
<p>제7조의2 (우선주식의 수와 내용)  <u>⑦ 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으로 하고,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. 그러나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.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8조 3의 규정을 준용한다.</u></p>	<p>제7조의2 (우선주식의 수와 내용)  <u>⑦ 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으로 하고,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. 그러나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.</u></p>	<p>- 제8조의3(동등배당) 변경에 따른 준용규정 삭제</p>
<p>제8조의2 (주식매수선택권)  <u>⑧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8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.</u>  <u>⑨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.</u>                      1.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.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2.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.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                     3.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                     4.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</p>	<p>제8조의2 (주식매수선택권)  <u>⑧ (삭제)</u>   <u>⑨ (좌동)</u></p>	<p>- 제8조의3(동등배당) 변경에 따른 준용규정 삭제</p>
<p>제8조의3(신주의 배당기산일)  <u>회사가 유상증자,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.</u></p>	<p>제8조의3(동등배당)  <u>회사는 배당 기준일 현재 발행(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)된 동종 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.</u></p>	<p>- 상법 개정에 따른 동등배당 내용 반영</p>
<p>제8조의4 (우리사주매수선택권)  <u>④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.</u></p>	<p>제8조의4 (우리사주선택권)  <u>④ (삭제)</u></p>	<p>- 제8조의3(동등배당) 변경에 따른 준용규정 삭제</p>
<p>제9조 (명의개서대리인)  <u>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의 명의개서 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.</u></p>	<p>제9조 (명의개서대리인)  <u>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이 정한 관련 업무규정에 따른다.</u></p>	<p>- 전자등록제도 도입에 따른 규정 정비</p>
<p>제10조 &lt;삭제 2019.09.16.&gt;</p>	<p>제10조 (주주명부 작성·비치)  <u>① 회사는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소유자명세를 통지받은 경우 통지받은 사항과 통지 연월일을 기재하여 주주명부를 작성·비치하여야 한다.</u>  <u>② 회사는 1%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(특수관계인 등을 포함한다)의 현황에 변경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.</u></p>	<p>- 전자증권법 규정내용 반영</p>
<p>제11조 (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)  <u>① 회사는 매결산기 최종일의 다음날로 부터 15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.</u>  <u>② 회사는 매결산기 최종일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.</u>  <u>③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,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,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. 회사는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.</u></p>	<p>제11조 (기준일)  <u>① (삭제)</u>   <u>① (좌동)</u>   <u>②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 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,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의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.</u></p>	<p>-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라 상장회사는 주주명부폐쇄제도의 의미가 없어진 현황을 반영</p>

현행	변경(안)	비고
제12조(전환사채의 발행) 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8조의 3의 규정을 준용한다.	제12조(전환사채의 발행) ⑤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회사는 전환 전에 지급시기가 도래한 이자에 대하여만 이자를 지급한다.	- 전환사채의 전환에 따라 발행일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배당이 지급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자지급시기 이후 전환일까지 발생할 수 있는 이자에 대한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음을 분명히 함
제13조(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) ⑤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8조의 3의 규정을 준용한다.	제13조(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) ⑤ (삭제)	- 제8조의3(동등배당) 변경에 따른 준용규정 삭제
제13조의2(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)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. (단서신설)	제13조의2(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)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 한다. 다만, 사채의 경우 법령에 따라 전자등록이 의무화된 상장사채 등을 제외하고는 전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다.	- 문구를 명확히 함 - 전자등록이 의무화되지 않은 사채의 전자등록 제외 근거 신설
제24조의2(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) ① 주주는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. ② 회사는 제1항의 경우 총회의 소집통지서에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서면과 참고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. ③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제2항의 서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, 회일의 전일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.	제24조의2(삭제) ① (삭제) ② (삭제) ③ (삭제)	- 전자투표 시행에 따른 규정 정비
제37조(감사위원회의 구성) ①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. 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 한다. ③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하고,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은 상법 제542조의10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 ④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에는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  ⑤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,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,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있는 주식의 합계가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 (신설)  (신설)  ⑥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위원장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.	제37조(감사위원회의 구성) ① (좌동) ② (좌동) ③ (좌동)  ④ 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 중 1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. ⑤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서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.  ⑥ 감사위원회 위원은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4항 단서에 따른 감사위원회 위원은 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다. ⑦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(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는 그의 특수관계인, 그 밖에 상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)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 ⑧ (좌동)	- 상법 개정에 따른 규정 정비
(신설)	부 칙 (2022.3.30) 제1조(시행일) 본 정관은 2022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.	부칙

**(첨부 2) 이사 선임의 건**

성명 (출생년월)	추천인	주요약력	최대주주와의 관계
서미혜 (1975.02) (사내이사)	이사회	- NYU Stern School of Business 국제재무학 석사 - Hong Kong University of Technology & Science 국제재무학 석사 - ㈜알에이케이 자산운용 상무/투자운용 - SH에너지화학 공동대표이사 - 현) SH에너지화학 경영총괄사장(CFO 겸임)	해당사항 없음
회사와의 3년간 거래내역		체납사실여부	부실기업 경영진 여부
없음		없음	없음

성명 (출생년월)	추천인	주요약력	최대주주와의 관계
이남녕 (1953.05) (사외이사)	이사회	-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- 미국 Columbia University Marketing MBA - 미국 Michigan University Executive management MBA - ㈜LG화학 상무이사 - 현) 피앤에이글로벌리소스(주) 대표이사 - 현) SH에너지화학 사외이사인 감사위원	해당사항 없음
회사와의 3년간 거래내역		체납사실여부	부실기업 경영진 여부
없음		없음	없음

성명 (출생년월)	추천인	주요약력	최대주주와의 관계
성원모 (1955.11) (사외이사)	이사회	- 미국 펜실바니아주립대 석유,가스공학과 박사 - 한국자원공학회 회장 - 지식경제부 자원개발전문위원 - 산업자원부 해외자원개발사업 용자심의위원 - 현) 한양대학교 자원환경공학과 명예교수 - 현) SH에너지화학 사외이사인 감사위원	해당사항 없음
회사와의 3년간 거래내역		체납사실여부	부실기업 경영진 여부
없음		없음	없음

**(첨부 3)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의 건**

성명 (출생년월)	추천인	주요약력	최대주주와의 관계
정미영 (1952.07)	이사회	- 미국 페이스대학교 경영대학원 회계학 석사 - 국세청 서대문세무서 소득세과장(서기관) - 현) 세무사 - 현) SH에너지화학 사외이사인 감사위원	해당사항 없음
회사와의 3년간 거래내역		체납사실여부	부실기업 경영진 여부
없음		없음	없음

**(첨부 4)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**

성명 (출생년월)	추천인	주요약력	최대주주와의 관계
이남녕 (1953.05) (사외이사)	이사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</li> <li>- 미국 Columbia University Marketing MBA</li> <li>- 미국 Michigan University Executive management MBA</li> <li>- (주)LG화학 상무이사</li> <li>- 현) 피앤에이글로벌리소스(주) 대표이사</li> <li>- 현) SH에너지화학 사외이사인 감사위원</li> </ul>	해당사항 없음
회사와의 3년간 거래내역		체납사실여부	부실기업 경영진 여부
없음		없음	없음
		법령상 결격사유 유무	없음

성명 (출생년월)	추천인	주요약력	최대주주와의 관계
성원모 (1955.11) (사외이사)	이사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미국 펜실바니아주립대 석유,가스공학과 박사</li> <li>- 한국자원공학회 회장</li> <li>- 지식경제부 자원개발전문위원</li> <li>- 산업자원부 해외자원개발사업 용자심의위원</li> <li>- 현) 한양대학교 자원환경공학과 명예교수</li> <li>- 현) SH에너지화학 사외이사인 감사위원</li> </ul>	해당사항 없음
회사와의 3년간 거래내역		체납사실여부	부실기업 경영진 여부
없음		없음	없음
		법령상 결격사유 유무	없음

# 제64기 정기주주총회 서면투표용지

- 일 시: 2022년 03월 30일 (수요일) 오전 10시
- 장 소: 전북 군산시 외항7길 20 (소룡동) (주)에스에이치에너지화학 대회의실
- 의결권에 관한 사항

주주명	(인)	주민(사업자)등록번호	
주소			
보유주식수	주	의결권 행사주식수	주

본인은 주식회사 에스에이치에너지화학의 제64기 정기주주총회의 회의목적사항에 대하여 주식회사 에스에이치에너지화학 정관 제24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결권을 행사합니다.

2022년 03월 일

주식회사 에스에이치에너지화학 귀중

- 아 래 -

번호	안 건	찬성	반대
제1호 의안	제64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		
제2호 의안	정관 일부 변경의 건		
제3호 의안	이사선임의 건		
	제3-1호 의안	사내이사 서미혜 선임의 건	
	제3-2호 의안	사외이사 이남녕 선임의 건	
	제3-3호 의안	사외이사 성원모 선임의 건	
제4호 의안	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기타비상무이사 정미영 선임의 건		
제5호 의안	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		
	제5-1호 의안	감사위원회 위원 이남녕 선임의 건	
	제5-2호 의안	감사위원회 위원 성원모 선임의 건	
제6호 의안	이사 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		

## ※ 유의사항

- 서면투표용지에 주주명, 주민(사업자)등록번호, 보유주식수, 의결권행사 주식수를 기재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, 주주명, 주민(사업자)등록번호, 서명 또는 날인 중 일부가 누락되거나 주주명부상의 기재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효표로 간주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보유주식 중 일부만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'의결권행사 주식수'란에 행사할 주식수를 기재하여 주시고 '의결권행사 주식수'란에 주식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보유주식수 전체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.
- 부의된 안건에 대해 주주총회장에서 수정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안건에 대해 서면 의결권행사는 기권으로 간주합니다.
- 서면투표용지에 찬성, 반대 어느 쪽도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권으로 간주합니다.
- 서면투표용지는 주주총회일 전일까지 회사에 도착(FAX는 인정하지 않음)하여야 하며, 이후 도착분은 무효로 간주합니다.